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88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윤준병 · 허성무 · 朴芝源
박홍배 · 임오경 · 박민규
김 윤 · 김 현 · 조계원
박희승 · 이정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취소 규정은 주로 서훈 이후의 일반 형사 범죄나 절차적 허위 사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거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폭력 가해자, 공권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행위자,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여전히 국가 포상을 유지하고 있는 심각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

통을 안긴 자들이 과거 독재 정권이나 왜곡된 정치적 지형 속에서 훈
·포장을 받아 영예를 누리는 것은 성실히 복무한 국가유공자들에 대
한 모독이며,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
하는 일임.

이에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 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게 부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
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대한
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8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를 “취소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 또는 결정에 따라 위법한 국가권력의 행사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5.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6.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로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훈의 취소가 결정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훈장 및 포장 등을 환수하고, 상훈에 따라 서훈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게 제공되는 예우,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자격 및 그 밖의 법률상 혜택을 즉각 박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② · ③ (생 략)

<신 설>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
헌법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
히 확인된 경우

6.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일
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
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회의 의결로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
훈의 취소가 결정된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서훈
이 취소된 사람의 훈장 및 포
장 등을 환수하고, 상훈에 따라
서훈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게 제공되는 예우, 보상금, 국
립묘지 안장 자격 및 그 밖의
법률상 혜택을 즉각 박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